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분원”이라는 표현을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변경하되, 치유 대상자의 수, 지역별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를 지역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 치유센터의 운영재원을 현행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에서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세분화함(안 제17조제2호).
-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치유센터에 대한 출연, 기부 등에 대한 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II. 검토의견

- 안 제6조제1항은 “분원”을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치유대상자의 수, 이용 편의성, 지역별 및 공동체 트라우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운영 중인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본원)’와 제주특별자치시에 소재한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분원)’가 있는데,

구분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본원)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분원)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116번길 19(옛 국군광주병원 인근)	제주특별자치시 중앙로 273 2층
인원	정원 13명 ※ 광주광역시 공무원 4명 별도 파견	정원 13명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3명 별도 파견
규모	대지 4,000㎡, 건물 2,200㎡(2024.4월 준공)	전용면적 458㎡(임차)
시설 현황	상담실6, 맞이방, 물리치료실1, 프로그램실4, 심리검사실1	상담실2, 맞이방, 물리치료실1, 프로그램실2
예산	2,201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기관운영출연금 1,251백만원 - 사업출연금 950백만원	1,707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기관운영출연금 1,205백만원 - 사업출연금 502백만원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사건 등 각 치유대상자들이 겪은 국가폭력 사건이 지역별로 존재하고, 치유센터의 운영 인원도 대등한 측면이 있으므로, ‘분원’이라는 표현 대신 지역별 공동체 트라우마의 특수성을 보다 잘 반영하여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 다만, 개정안은 안 제6조 제1항에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 근거를 두고, 같은 조 제2항에 다시 지역별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설치 근거를 2개의 항에 중복하여 규정하면 법문의 의미가 불분명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¹⁾,

제1항에는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 근거를 두고, 제2항에는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 시 고려할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1) 개정안에 따르면, ①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와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지역별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는 서로 별개의 기관인지, ② 본원이 있는 광주광역시에도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지 등과 관련하여 법문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해지는 측면이 있음.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²⁾.

- 따라서,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하는 수정의견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제시함.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6조(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 등) ① 치유센터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광역거점형</u> 치유센터를 설치·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 등) ① 치유센터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지역별로 광역거점형</u> 치유센터를 설치·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u>따른</u> 광역거점형 <u>치유센터</u> 는 치유대상자의 수, 이용 편의성, <u>지역별 및</u> 공동체 트라우마의 특수성 등을 <u>고려하여 지역별로 설립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u>따라</u> 광역거점형 <u>치유센터</u> 를 <u>설치·지정·운영 또는 업무 위탁을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u> 치유대상자의 수, 이용 편의성 <u>및</u> 공동체 트라우마의 특수성 등을 <u>고려하여야 한다.</u>
③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지정·운영 및 업무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지정·운영 및 업무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전문위원 김 성 완)

- 2) 참고로 트라우마 센터와 관련한 유사 입법례를 보면, 특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트라우마 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안산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① 국가는 피해자와 안산지역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u>안산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안산트라우마센터는 국가등이 운영하여야 하며,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및 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